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2/4분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교부(재배정)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6007 (2016.04.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2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광림장애인주간보호 외 7개소

나. 지급금액: **금231,866,700원(금이억삼천일백팔십육만육천칠백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전분기까지 교부액 누계 (a)			금분기 교부액 (b)			교부액 누계 (a+b)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250,065	240,065	10,000	231,866.7	217,866.7	14,000	481,931.7	457,931.7	24,000
광림	34,006	32,756	1,250	30,866.95	29,116.95	1,750	64,872.95	61,872.95	3,000
성모자애제1	23,787	22,537	1,250	34,038	32,288	1,750	57,825	54,825	3,000
성모자애제2	34,024	32,774	1,250	28,158	26,408	1,750	62,182	59,182	3,000
역삼	37,574	36,324	1,250	33,288	31,538	1,750	70,862	67,862	3,000
하상	29,119	27,869	1,250	24,557	22,807	1,750	53,676	50,676	3,000
한우리	30,041	28,791	1,250	26,743	24,993	1,750	56,784	53,784	3,000
해마을	30,657	29,407	1,250	27,462.75	25,712.75	1,750	58,119.75	55,119.75	3,000
예수와	30,857	29,607	1,250	26,753	25,003	1,750	57,610	54,610	3,000

라. 교부방법: 시설장의 청구에 의거 지정예금통장에 무통장송금 후 정산보고

마.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307-10)

바. 교부조건

-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3)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붙임
1. 2016년 2분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급조서 1부
 2. 2016년 2분기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공문 1부
 3. 2016년 2분기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내역 1부.
 4. 지출결의서(별첨) 끝.

